

#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

제정 2015.07.

개정 2016.06.

개정 2019.01.

개정 2020.04.

개정 2023.03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본 지침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에 소재한 ‘경기 콘텐츠코리아 랩’(이하 ‘경기콘랩’ 이라 한다.)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, 해당 용어의 정의는 「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 이용 지침」 제3조(용어의 정의) 1항과 동일하다.

1. 회원 : 경기콘랩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
2. 이용자 : 경기콘랩을 이용하는 자
3. 방문객 : 경기콘랩 서비스 이용 외 목적으로 방문한 개인
4. 운영자 : 경기콘랩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의 관계자

**제3조(개관 및 휴관)** 경기콘랩은 다음 각 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평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.

1. 법정공휴일(토·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로 한다.)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
2. 시설점검 및 보수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 단, 이 경우에는 회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3. 그 외 천재지변 및 운영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기콘랩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
**제4조(이용시간)** 경기콘랩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 경기콘랩 공간은 회원 대상으로 평일 10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운영한다.

2. 시설 및 물품의 사용 및 대관 시간은 제1항 개관 시간 안에서 정한다.
3. 경기콘랩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축소, 또는 휴관일로 지정하여 변경 운영할 수 있다. 단, 제1항의 개관 시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운영시 반드시 사전에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**제5조(출입제한)**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음주를 한 자
2.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
3. 재난, 도난, 상해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
4.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(단, 법정대리인을 동반하는 경우 허용)
5.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하는 자 (단,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예외)
6.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 등 정부 및 경기콘랩의 방역관리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
7.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경기콘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

②제5조 1항 이외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퇴실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등록 또는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등록이 발각된 경우
2. 소란스러운 행위 및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
3. 프로그램 운영 시 진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
4. 도난 행위
5. 타인의 정보 도용
6. 경기콘랩 내에서의 영업 활동 등 상업행위 및 영리행위
7. 타인을 “스톡”(stalk)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 
 (\*스톡(stalk) : 타인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.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, 이메일,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을 모두 포함)
8. 시설물 파손
9. 대관시설 및 물품의 무단 반출
10. 대관시설 및 물품 이용 시 「저작권법」 상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11. 소음 등 공해의 발생, 업무방해 등으로 타 회원 및 경기콘랩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
12. 회원 개인 물품을 적치 및 방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13. 인화성, 폭발성 위험이 있는 물품,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

14. 경기콘랩에 사전 통지 없이 개인용 냉·난방 기자재를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
15. 경기콘랩 내 흡연 및 음주 행위
16.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음식물 섭취
17.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(단,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제외)
18. 기타 경기콘랩 관리 필요에 따른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는 행위

**제6조(행위의 제한)** ①경기콘랩 이용자는 동 지침 제5조(출입제한) 및 「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 이용 지침」 제23조(이용자의 의무)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의 발각시 「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 지침」 제3장 회원 자격 제한 및 정지조치에 따라 출입 제한을 할 수 있으며, 사안에 따라 회원자격 제한 및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.

③감염병 유행 확산 등에 따라 발표된 정부 및 경기콘랩의 방역관리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, 사안에 따라 퇴실 및 회원자격 제한 및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.

## 제2장 시설 및 물품의 권한, 대관, 출입제한 등

**제7조(권한)** 시설 및 물품사용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.

1.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은 회원에 한한다.
2. 시설 및 물품의 점검·보수·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8조(대관 · 대여)** 시설의 대관 및 물품의 대여는 다음과 같다.

1. 시설 대관 및 물품의 대여는 회원에 한하며, 회원의 등록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「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 지침」 에서 따로 정한다.
2. 대관시설 및 물품의 범위, 대관의 기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3장 ‘시설 및 물품의 사용’에서 정한다.

**제9조(출입의 제한 구역)** 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에 출입 제한 구역을 두고 운영한다.

1. 경기콘랩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다.
  - 가. 인포데스크
  - 나. 운영사무실

- 다. 그 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
2.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.

### 제 3장 시설 및 물품의 사용

제10조(시설의 범위) 경기콘랩 내 시설(부대설비 포함)은 다음과 같다.

1. 경기콘랩 시설은 사용신청 및 관계자 승인을 통해 외부에서 사용하는 「대관시설」 과 이용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「공용시설」, 기타 「부대시설」 및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「물품」 으로 한다.
2. 「창작시설」 은 「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장비 운영 지침」 에 따라 이용 범위를 정하고 별도로 관리한다.

제11조(시설의 종류) 경기콘랩 시설은 제10조(시설의 범위)에 따라 「대관시설」, 「공용 시설」, 「창작시설」, 「부대시설」, 「물품」 으로 분류하며 종류는 그 다음과 같다.

1. 「대관시설」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가. 별똥별(L2) : 7층 1개실 100석 규모, 강연·세미나 및 네트워킹 공간
2. 「공용시설」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가. 새벽별(L1) : 7층 8석 규모, 전시 및 협업공간
  - 나. 셋별(M1~M3) : 7층 3개실(M1, M2, M3)
  - 다. 여우별(L3) : 7층 1개실 20석 규모, 강의실
  - 라. 웰컴데이블 : 7층 4석 규모
3. 「창작시설」 (고래별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가. 영상촬영스튜디오(S1) : 7층 1개실
  - 나. 녹음실(S2) : 7층 1개실 2석 규모
  - 다. 영상편집실1(S3) : 7층 1개실 2석 규모
  - 라. 영상편집실2(S4) : 7층 1개실 2석 규모
  - 마. 사진촬영스튜디오(S5) : 7층 1개실
4. 「부대시설」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가. 인포데스크 : 7층 1개 2석 규모
5. 「물품」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가. 영상 : 프로젝터, 스크린, TV모니터 등
  - 나. 음향 : 스피커, 앰프, 무선 마이크 등
  - 다. 업무용품 : 강의용PC, 인쇄용PC, 복사기 등

- 라. 소모품 : 리모콘, 각종 케이블, 마커·지우개, 인쇄용지 등
  - 마. 기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
6.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추가 및 삭감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신청 및 이용방법)** ① 경기콘랩의 「대관시설」, 「공용시설」, 「창작시설」 신청은 경기콘랩 회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. 각 시설 및 장비별 신청 및 접수 처리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
② 「대관시설」, 「공용시설」, 「창작시설」의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「대관시설」 : 별똥별(L2)
  - 가. 신청방법 : 경기콘랩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
  - 나. 신청대상 : 문화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
  - 다. 신청내용 : 문화콘텐츠 및 취·창업 관련된 비영리 목적의 행사, 전시, 교육 등
  - 라. 예약가능기한 : 사용 4주 전부터 1주 전까지
  - 마. 대관제한 : 사전 협의 없이 4회 이상 무단 당일 취소, 무단 미 사용할 경우
2. 「공용시설」 : 셋별(M1~M3)
  - 가. 신청방법 : 경기콘랩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
  - 나. 신청대상 : 경기콘랩 회원
  - 다. 신청내용 : 회의실 사용
  - 라. 이용제한 : 사전 협의 없이 4회 이상 무단 당일 취소, 무단 미 사용할 경우
4. 「창작시설」 : 영상촬영스튜디오(S1), 녹음실(S2), 영상편집실1(S3), 영상편집실 2(S4), 사진촬영스튜디오(S5)
  - 가. 신청방법 : 경기콘랩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
  - 나. 신청대상 : 경기콘랩 회원
  - 다. 지원내용 : 1인 1실 당 1일 4시간까지 무상 이용
  - 라. 예약가능기한 : 예약오픈일부터 이용일 당일까지 (단, 예약이 없을 경우에만)
  - 마. 대관제한 : 사전 협의 없이 4회 이상 무단 당일 노쇼, 무단 미 사용할 경우

③ 「대관시설」, 「공용시설」, 「창작시설」의 이용시간은 「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」 제4조(이용시간)에 따른다.

④ 경기콘랩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「대관시설」, 「공용시설」, 「창작시설」의 신청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3조(대관 우선순위)**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경기콘랩 자체 프로그램에 우선 대관하며, 이하 타 기관 및 개인의 대관 신청은 운영상 필요 및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.

**제14조(대관내용의 변경)** 운영상 필요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자는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5조(대관의 금지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지 않는다.

1. 대관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리,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
2. 대관 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
3. 사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
4.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

**제16조(시설의 신청제한 및 취소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「대관시설」의 대관신청을 받지 않거나 이용자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시설을 훼손·망실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
2. 대관조건 및 사용 주의의무,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
3. 부가사항 별도협약을 위반한 때
4. 행사 내용이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
5.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사
6. 영리 목적의 행사 및 교육, 전시 등
7. 기타 정치선전, 특정 종교적 색채가 짙은 행사, 사회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사
8. 「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」 제12조(사용시간) 및 제13조(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)을 위반한 자
9.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

**제17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** 시설을 대관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이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이용자는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3. 사용 후에는 대관시설 및 사용물품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4.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, 설치, 철거 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5. 이용자는 「물품」 및 기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항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.
6.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7. 이용자는 재난 및 도난·분실, 상해 등 인적·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 이용자의 과실로 인적·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

였을 경우, 책임의 소지는 이용자에게 있다.

8. 시설의 훼손 및 망실 등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기준에 의거하여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9.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.

**제18조(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)**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고, 시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.

1.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2. 이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,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하여야 한다.
3. 이용자가 제1호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의 손해를 유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「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장비 이용 지침」 제10조(손실에 대한 책임)에 따라 손실에 대한 책임 및 범위, 변상 방법 등을 정하고 지체 없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광고, 홍보문의 협의)** 이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## 제 4장 시설 및 물품의 사용

**제20조(시설 및 물품사용료)**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은 무료로 하고, 기타 부가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.

**제21조(복사·인쇄 요금)** 복사·인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,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하며 1인 1일 10매의 제한을 둔다. 해당 제한은 이월되지 않는다.

**제22조(시설 및 물품의 훼손, 망실 등 변상)** 시설 및 물품의 훼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은 다음과 같으며, 손실에 대한 책임 및 범위, 변상 방법 등은 「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장비 이용 지침」 제10조(손실에 대한 책임)에 따라 정한다.

1. 시설 및 물품의 훼손, 망실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.
2. 시설 및 물품의 훼손 시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, 망실 시에는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. 사용완료 후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

3. 현품변상이 어려울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.

## 제5장 안전사고 주의 및 책임

제23조(안전사고) 경기콘랩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1. 이용자는 경기콘랩 내에서 재난 및 도난·분실, 상해 등 인적·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및 이용자 본인과 다른 이용자의 피해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.
2.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지침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